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
김완기 FTA정책기획과장(044-203-5740), 김파라 사무관(044-203-5742)
안세진 FTA협상총괄과장(044-203-5750), 김수진 사무관(044-203-5751)

한-베트남 자유무역협정(FTA) 가서명 완료

- 양측은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'15.3.28.(토) 서울에서 한-베트남 자유무역협정(FTA)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-베트남 FTA에 대한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힘

○ 양측은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실질타결 선언('14.12.10)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한-베트남 자유무역협정(FTA)의 최종 협정문안을 확정하였음

[한-베트남 FTA의 의의]

□ 한-베트남 FTA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**상생형 FTA의 주요사례이자**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**親중소기업 FTA임**

○ 우리기업은 주요 소재·부품의 관세 철폐로 **중간재 수출 증가효과**를 누리고, **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**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게 될 전망

- 또한, **섬유, 자동차 부품, 화장품, 가전제품 등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에 대한 베트남 시장을 다수 개방**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

* 면·편직물, 소형가전,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·중견기업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추가 양허를 획득

□ 또한, 빠르게 성장하는 **베트남 내수시장의 기업 경쟁환경을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○ 日-베트남 EPA('09.10월 발효) 체결로, **일본보다 불리한 경쟁조건**에 직면한 **우리기업들이 보다 동등하게 경쟁할 여건을 확보***

* 자동차 부품, 철강,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의 양허를 획득하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, 건설, 도시계획·조경, 기계·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베트남의 도시화·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
□ 한편, **투자자 보호를 강화**하여 베트남 진출 **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**하고, **문화협력을 강화하여 한류 확산**에 기여할 것임

○ 높은 수준의 **투자 보호와 지재권 보호 규범을 채택**하고, 베트남 內 **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문화 협력 규정**을 포함

[향후 계획]

□ 동 협정 **영문본(가서명본)은 3.30(월)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(www.fta.go.kr)를 통해 공개**할 예정이며, 한글본(초안)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공개할 예정임

□ 한-베 양국은 **금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및**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**조속히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**

○ 정부는 **영향평가와 국내보완대책 수립** 등을 통해 한-베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

[별첨1] 한-베트남 FTA 협상 추진 경과
[별첨2] 한-베트남 FTA 주요내용
[별첨3] 한-베트남 FTA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김완기 과장(☎ 044-203-5740) 또는 FTA협상총괄과 안세진 과장(☎ 044-203-575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첨1] 한-베트남 FTA 협상 추진 경과

구분		주요 협상 내용
1차	'12.9.3~4 (서울)	▪ 협상운영세칙(TOR : Terms of Reference) 채택
2차	'13.5.22~24 (베트남 하노이)	▪ 우리측의 Text(상품, 원산지, 서비스, 투자 등 13개 분야) 제시로 문안에 바탕을 둔 본격 협상 개시
※ VIP 방베 계기 한·베트남 정상회담(13.9월)에서 "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" 추진 합의		
3차	'13.10.16~18 (부산)	▪ 상품 분야의 본격적인 양허안 협상에 돌입 ▪ 별도 챕터 미합의 분야(지재권, SPS, 전자상거래, 경쟁)에 대한 전문가 대화 진행
4차	'14.3.12~14 (베트남 호치민)	▪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, 서비스 양허 방식 관련 절충점 논의 등 협상 진전을 위한 계기 마련
5차	'14.5.20~23 (서울)	▪ 상품 양허 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, 서비스 양허 관련 조건부 positive 방식에 공식적으로 합의
6차	'14.7.28~8.1 (베트남 호치민)	▪ 상품 양허 3차 오퍼를 교환하고, 서비스 분야 양허 협상 개시
7차	'14.9.29~10.2 (서울)	▪ 상품 양허안을 바탕으로 관세 철폐 기간 등을 논의하고, 협정문상 잔여 쟁점 합의 도출 노력 ▪ 서비스 양허 관련 논의를 추가 진행하고, 지재권, 경쟁, 전자상거래, SPS 분과의 경우 협상 가속화
※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·베트남 정상회담(14.10월)시 "한-베 FTA 연내 타결" 목표 재확인		
8차	'14.11.17~21 (베트남 다낭)	▪ 분과별 협상을 통해 협정문 관련 쟁점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한편,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수석대표 협의를 동시에 진행 ▪ 원산지, 통관, 경쟁 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 도출
9차	'14.12.8~10 (서울)	▪ 상품 양허, 서비스·투자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실질타결
※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·베 정상회담(14.12.10일)에서 "한-베 FTA 실질타결 선언"		
	'15.1월~3월	▪ 기술협의, 법률검토
※ 한-베트남 FTA 가서명 (15.3.28, 서울)		

[별첨2] 한-베트남 FTA 주요내용

1 개요

□ 한-베트남 FTA 협정문은 **서문 및 총 17개 챕터(부속서 포함)**로 구성

구분	챕터 명
상품관련	① 상품, ② 원산지(PSR 포함), ③ 통관 및 무역원활화, ④ 무역구제, ⑤ SPS(위생·검역), ⑥ TBT(기술장벽)
서비스·투자	⑦ 서비스 (금융, 통신,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), ⑧ 투자
규범·협력	⑨ 지재권, ⑩ 경쟁, ⑪ 투명성, ⑫ 전자상거래*, ⑬ 경제협력 *
총칙	⑭ 일반조항, ⑮ 예외, ⑯ 분쟁해결, ⑰ 제도 및 최종 조항

* 베트남 최초로 양자 FTA에서 별도 챕터 채택(전자상거래)

2 상품

□ **(상품)** 한-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'12년도 수입액 기준 **한국 94.7%(+3%p)-베트남 92.4%(+6.1%p)**로 **자유화수준 합의**

○ **(베트남측)** 베트남측은 이미 對韓 수입의 **86.3%**(수입액 기준)를 양허, 1.2%는 무관세, 1.9%는 3년, 2.9%는 5~10년, 나머지 0.1%는 15년 관세 철폐하여 **92.4%의 자유화율** 달성

○ **(우리측)** 우리측은 이미 對베 수입의 **91.7%**(수입액 기준)를 양허, 1.3%는 즉시, 1.0%를 3~5년, 나머지 0.8%는 7~15년(3개 품목 15년) 관세철폐하여 **94.7%의 품목 개방**

□ **(베측 시장개방)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**(면직물·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등) **등은 3년, 변압기, 전동기, 믹서, 합성수지, 항공기부품 등은 5년, 철도차량 부품, 선재, 원동기, 의약품 등은 7년, 자동차 부품, 화물자동차**(5톤~20톤)**, 승용차**(3000CC 이상)**, 화장품, 전기밥솥, 에어컨 등은 10년 관세철폐 확보**

○ 일-베 EPA 발효('09년)로 日기업보다 베트남內에서 가격경쟁력이 불리하였으나,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심(가전·자동차부품·화장품 등)으로 **동등 내지 유리한 조건 확보**

□ **(우리측 시장개방)** 우리측은 **농수임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**하여 △양허제외(기준세율 유지), △저율관세할당(TRQ), △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**예외적 수단을 확보**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

○ 쌀(협정 대상 제외)·고추·양파·녹차·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의 경우, 한-아세안 FTA에 추가한 시장개방은 없음

- 열대과일(구아바·망고 등)·마늘(건조/냉동)·생강(미분쇄·미파쇄(건조/기타), 파쇄·분쇄(신선·냉장/건조/기타))·돼지고기(삼겹살/기타(냉동)) 등은 10년 철폐, 천연꿀·팥·고구마전분은 15년 철폐

* **(그 외 주요 농수산물 양허 현황)** 호도(탈각(신선/건조), 틸라피아(냉동), 연어(냉동), 전갱이(냉동), 기타 돔(냉동), 기타게(냉동), 기타 새우류(염장), 다시마(염장), 참치가공품(2개 세번)은 10년 철폐, 맥주 5년 철폐

○ 對베 수입액이 가장 큰 새우(1.4억불)의 경우, 한-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관세철폐가 아닌 저율관세할당(TRQ)를 제공

* 초기 물량 10,000톤, 이후 5년에 걸쳐 15,000톤까지 증량

3 서비스·투자

□ **(서비스)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**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,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**재협상 조항을 포함**

○ **(양허)**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 확보

※ 도시계획·조경, 기타기계·장비임대, 건설 서비스 관련 베측 양허 개선

○ **(금융 부속서)** 우리 금융업계의 현지 진출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(금융 서비스 위원회) 확보

○ **(통신 부속서)** 우리 통신 사업자의 對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 이상의 규범 확보

○ **(자연인의 이동 부속서)** 서비스 무역 원활화를 위한 자연인의 일시입국·체류 요건 등을 규정하고,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마련

□ **(투자)**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**한-아세안 FTA 투자협정**과 **한-베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**에 합의

○ 투자협정상 의무에 대한 유보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는, 베측의 경험 부족을 감안하여 한-베 FTA 발효 1년 후 완결하도록 하는 Built-in 조항을 도입하되,

○ 베측이 향후 체결할 선진국과의 FTA(TPP, 베-EU) 수준을 반영하여 **최고 수준(the most advanced level)의 유보**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의

4 규범·협력 등

1 원산지 & 통관

○ **(원산지규정)** 한-아세안 FTA 대비 **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**

업종	품목별원산지기준의 주요 내용
농수산물	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(WO)을 유지하되,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(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中 택일)의 비율 제고 (예: 가당연유, 유당 등)
섬유·의류	대부분 한-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하였으며,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축성 합의 (예: 커튼, 모포 등)
기계, 전기·전자	우리의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-아세안 FTA상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(40%)으로 합의 (예: 세탁기, 냉장고 등)
자동차	완성차는 한-아세안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(RVC45%)으로 하되,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 제고 (예: 기어박스, 차축 등)

○ **(역외가공지역) 개성공단**의 경우, 업계 요청을 기초로 **100개 품목을 신규 선정**(HS 6단위 기준)

○ **(원산지절차/통관)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** 등을 통해 수출자·생산자의 편의 도모

- **(사전심사)** 상대국 수출자·생산자도 품목분류·관세평가·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

- **(원산지증명)**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면제(한-아세안 FTA 200불 이하) 및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

2 무역구제

○ **(양자세이프 가드)** 한베 FTA 양허로 인한 **국내기업 피해 구제가능성**을 확보하고 **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**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

○ **(반덤핑·상계관세)**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(15일전)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

- 덤핑 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, 최소부과원칙 등을 통해 총 덤핑 마진이 필요 이상 높게 계산 되는 것을 방지

-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악용 가능성을 예방

○ **(무역구제위원회)** 한베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논의를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

- 분쟁 가능성 방지 및 상호협의를 통한 해결 기회 제공

3 기술장벽 (TBT)

○ **(주요내용)** 건자재, 화장품, 의료기기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,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- 또한 기술규정 제·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(60일)을 명확히 하고, TBT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례적인 TBT 현안 논의 채널 마련

○ **(평가)** 적합성평가절차, 투명성, 협력 등 우리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WTO 플러스 수준의 포괄적 협정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

4 위생 및 검역 (SPS)

○ **(주요 내용)** 당사국간 SPS 조치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기회 모색, SPS 챕터 이행 점검 및 정보교환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

○ **(평가)** WTO/SPS 협정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협정문을 구성함으로써 추가적인 의무 부담을 배제

5 전자상거래

○ **(주요 내용)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**에 합의하고, **전자인증·서명, 온라인 소비자 보호, 개인 정보 보호, 종이 없는 무역 등** 실체적 요소들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

○ **(평가) 베트남 양자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에 합의**하고, 양국간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다수 규정을 포함

6 지식재산권

○ **(주요 내용)** 저작권, 상표권, 특허권 등에서 **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**하고 **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 마련**

- **(저작권)** 한류 콘텐츠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해당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
 - 저작자·실연자·음반제작자·방송사업자의 배타적 복제권*을 보장하고,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

* 이용자가 권리자의 사전허락없이 콘텐츠를 복제할 경우에는 처벌 가능

- **(상표권)**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, 상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항 합의
 - 유명상표는 등록 전에도 보호하여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방지하고, 제품·포장의 형상도 상표로 보호
- **(특허권)** 특허공지예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발명이 사전에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된 출원의 구제 방안 마련
- **(부정경쟁)** 타인의 상표, 명성, 품질 등과 오인하게 하는 상업활동을 금지
- **(집행)**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한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,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·폐기 명문화 등 규정

○ **(평가) 베트남이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재권 규범**을 형성함으로써, **베트남 내에서 우리나라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**으로 평가

7 경쟁

○ **(주요내용) ① 절차적 공정성·투명성·비차별·적시성** 등 경쟁법 집행 원칙 보장, ② **국영기업·국가 독점 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** 의무, ③**경쟁 당국간 협력** 의무 등 규정

○ **(평가)** 피심의인의 **방어권 보장, 최종 의결서 서면 송부, 법집행시 부당한 지연 금지 등 우리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** 마련

- 또한, 국영기업 및 국가 독점 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베트남 국영기업간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

8 경제협력

○ **(주요내용)**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 부문*(산업, 농림수산업, 규정 및 절차, 기타)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

* (산업분야) 자동차, 철강 및 금속, 석유화학, 전자, 기계, 섬유·직물, 유통·물류 등

(농림수산분야) 농축산업, 수산 및 양식, 산림관리,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
(규정 및 절차) 표준 및 기술규정, 관세행정절차, 원산지, 지적재산 등 분야 협력
(기타) 중소기업정책, 통계, 공정경쟁, 인프라, 투자 등

○ **(평가)**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규정하여 **양국 간 협력 강화의 기틀 마련**

9 투명성

○ **(주요내용)** ① 협정 관련 조치(안)의 **공표 및 의견제시 기회 보장**, ② 다른 쪽 당사국 요청시 해당 조치(안)에 대한 정보 제공, ③ 행정처분시 합리적인 통지 및 방어 기회 제공, ④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·행정적 구제절차 설치 또는 유지

○ **(평가)** 양국 법령·제도 하에서 가능한 범위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통하여,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 제공

10 분쟁해결

○ **(주요내용)**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**협의 절차, 중재패널 절차,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·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**

○ **(평가)** 분쟁해결의 **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**하고(긴급시 단축 시한 별도 적용), **중재패널 보고서에 대한 구속성을 명시**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

* ▲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, ▲패널설치일부터 120일(긴급시 60일)내 중간

[별첨3] 한-베트남 FTA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

우리 양허		양허 단계	베트남 양허	
주요 품목	품목수		품목수	주요 품목
실장어(활어), 돔(치어), 농어(치어), 피조개 종패(활어/신선/냉장)	4	즉시 철폐 (무관세)	65	화물자동차, 펌프, 철근, 공기조절기, 기타정밀화학원료, 기타철강금속제품, 냉연강판, 복합비료, 봉강, 사료, 아연도강판, 열연강판, 의약품 , 원유 등
방모사, 소모사, 양모사, 방모직물, 순면사, 생지, 기타면직물, 폴리에스터사, 탄성사,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, 남성용 바지/아우터셔츠, 블라우스, 티셔츠, 스웨터, 양말, 코트 및 자켓, 신사복 상의, 여성용 수트/자켓/바지/스커트, 잠옷, 브래지어, 손수건, 스카프, 장갑, 파티클보드, 섬유판, 블록보드 등	87	즉시 철폐 (유관세)	-	-
건전지, 경유 등 석유제품, 기타고무제품, 기타농산가공품, 석유제품, 시멘트, 자전거, 자전거부품, 샴푸, 헤어린스, 필름, 쇠고기(식용설육(신선/냉장), 혀(냉동), 간장(냉동) 등), 닭고기(절단육(냉동)), 발효유, 치즈, 양송이버섯, 포도당, 과당, 맥아추출물, 국수, 곡류가공품, 스위트콘, 라이스페이퍼, 차/마태 조제품, 방어(신선/냉장), 넙치(냉동), 가자미(냉동), 피조개(신선/냉장), 갯장어(활어), 가자미(신선/냉장), 건조어란, 제재목 등	216	3년 철폐	16	기타영사기, 나일론직물, 부직포, 순면직물, 재생단섬유직물,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, 혼방면직물 등
저/고밀도에틸렌, 에틸렌초산비닐, 선박용압축점화식 엔진, 선박용 부품, 고구마(냉동), 과일주스, 감자(조제/냉동), 잼, 두부, 향미용 조제품, 기타소스류, 주류, 당면, 미과, 인삼음료, 캐슈넛(미탈각/탈각), 가오리(냉동), 복어(냉동), 피조개(냉동), 성게(냉동), 조제문어, 조제소라, 조제연체동물, 가리비과조개(기타), 제재목, 파티클보드, 섬유판, 합판, 기타목재류, 건축용목제품 등	134	5년 철폐	47	음극선관모니터, VCR, 계전기, 골판지원지, 기타생활용품(프레스파스너), 기타식탁용구, 기타유리제품, 기타직물, 순면직물, 편직물, 혼방면직물, 유아용조제식료품, 무선통신기기부품, 믹서, 변압기, 스위치, 신발부분품, 자동차부품, 전동기, 전선, 전신기기, 카스테레오, 컴포넌트, 합성수지, 항공기부품 등
기타전선, 통신용전선, 합판	7	7년 철폐	29	가열난방기(철강제 조리기구), 커피탕기, 비금속제 경첩, 보온밥통, 변압기, 볼트/너트, 선재, 원동기, 의약품, 자전거부품, 전동기, 철도차량부품, 항공기부품 등
-	-	8년 철폐	6	닭고기
베어링, 열대과일(구아바/망고/망고스틴/바나나/파인애플 등), 기타 과일주스, 난초/국화 등 화훼, 마늘(건조/냉동), 생강(미분쇄/미파쇄, 건조/기타), 생강(분쇄/파쇄, 신선/건조/기타), 호도(탈각/신선·건조), 돔기타(냉동), 전갱이(냉동), 틸라피아(냉동), 섬유판, 합판 등	48	10년 철폐	106	화장품(스킨로션/파우더 등), 가열난방기, 가청주파증폭기, 건축용목제품, 계전기, 스위치, 모니터, 기타고무제품, 전기밥솥, 냉장고, 라디오, 동조가공품, 복합비료, 세탁기, 승용차(3,000cc 초과), 화물자동차(5톤~20톤), 안전유리, 아연도강판, 에어컨, 원동기, 자동차부품, 전선, 전자레인지, 식기세척기, 축전지, 칼라TV, 크라프트지, 타이어, 펌프, 토스터기, 필름,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, 순면직물, 합성수지 등
고구마전분, 천연꿀, 팥(종자용외)	3	15년 철폐	3	자동차부품(기어박스)
새우(냉동/가공)	7	TRQ	-	-

* (한) HS2012 10단위, (베) HS2012 8단위 기준